

2018학년도 전기(2019.02.졸업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
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“무시험검정원서”를 신청기간에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만 제출)

1. 신청자격

-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

2. 신청기간: 2018. 12. 12.(수) ~ 12. 14.(금)

3. 신청방법

- [URP종합정보 / 학사 / 교직관리 /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]에서 "무시험검정 원서" 출력 후 서명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
※ 무시험검정원서에는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

4. 제출서류

- 가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(공통) 1부
- 나. 영양사면허증 사본(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) 1부.

5. 유의사항

- 가.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19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“무시험검정원서”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
- 나. 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을 경우 “교직이수포기서”를 2018. 12. 14. (금)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다. 교원자격증은 졸업일(2019.02.22.(금))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수령 가능

붙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부. 끝.

[별표 1] <개정 2015.12.15.>

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조제3항 관련)

1. 이수학점기준

구분	이수학점
가.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	1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 2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
나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(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	1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(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점 이상) 2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(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
다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	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) 전문상담교사(1급) 양성과정: 18학점 이상 2) 전문상담교사(2급) 양성과정: 42학점 이상
라. 법률 제7068호 초·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	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)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: 24학점 이상 2)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: 36학점 이상
마. 「유아교육법」 별표 2의 준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	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
바.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	교직과목 18학점 이상

비고

1. 구분란 가목 및 바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2. 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.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(이하 “표시과목”이라 한다)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
 - 나.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
 - 다.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. 이 경우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3. 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·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.

2. 성적 기준: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(이하 "교원양성과정"이라 한다)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

가. 전공과목: 평균 75점 이상

나. 교직과목: 평균 80점 이상

3.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 할 것

가.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: 적격 판정 1회 이상

나.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: 적격 판정 2회 이상

4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